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자준수규칙 제 1 조 ~ 제 11 조 (생략) <신 설>	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자준수규칙 제 1 조 ~ 제 11 조 (현행과 같음) 제 11 조의 2(매각결정과 매각불허결정) ① 낙찰자에 대한 매각결정은 낙찰자를 결정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합니다. 다만,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불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②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매각결정합니다. ③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한 경우 매수대금 납부전까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으면 최고액입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,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액입찰자인 낙찰자에게 매각결정합니다.	○ 입찰자에 대한 매각불허결정 및 공유자우선매수제도에 대한 사전 고지
제 12 조 ~ 제 20 조 (생략)	제 12 조 ~ 제 20 조 (현행과 같음)	